

의안번호	제2023-5차
의결일자	2022년 6월 9일

이 사 회 의 사 록

주식회사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이 사 회 의 사 록

1. 일 시 : 2023년 6월 9일(금) 오전 10시
2. 장 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19층 내 회의실
3. 출석인원 : 법인이사총수 1명 출석법인이사수 1명
감독이사총수 2명 출석감독이사수 2명

(주)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본 회사”라 한다)의 의장인 법인이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직무수행자로 선정된 전유채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전원의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4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키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.

의장은 “이사회 자료를” 통하여 부의안건을 상정하다.

의 안 1. 신주 발행의 건(기명식 보통주식)

의장은 의안1. 신주 발행의 건(기명식 보통주식)에 관하여 배부한 이사회 자료 및 정관 제12조 제1항, 제2항에 따라 신주(기명식 보통주식)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액하고자 함을 설명하다. 동 자본증가의 조건과 내용을 회의에서 설명한 후에, 의장은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제의하다.

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300,000주

1 주 의 금 액 : 10,000원

발 행 가 액 : 1주당 100,000원

청 약 일 : 2023년 06월 26일

납 입 일 : 2023년 06월 26일

납입을맡을은행 : 우리은행 자산수탁부

인 수 방 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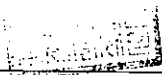
정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(주택도시기금의 운용·관리자인 국토교통부장관)에게 신주(기명식 보통주식) 300,000주를 전부 배정한다. 인수청약이 있는 주식의 수가 회사 신주 발행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는 실권주 배정을 위하여 납입 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청약예정자 중 미청약인에 대하여 상법 제423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출석이사들은 제안된 신주발행 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, 만장일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.

결 의 사 항 : 의장의 제안대로 신주(기명식 보통주식)를 발행한다.

의장은 이로서 금일 의안이 전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.

(이하 후면 기명날인을 위한 여백)



상기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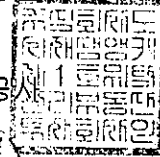
2023년 06월 09일

주식회사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의장/법인이사 주택도시보증공

감독이사 김 상

감독이사 윤 남



배부자료 : 제5차 이사회 자료



2023년 제5차

이 사 회 자 료



주식회사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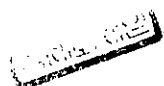
(주)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2023년 제5차 이사회 회의자료

◇ 일 시 : 2023년 06월 09일(금) 오전 10시

◇ 장 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19층 내 회의실

◇ 의결사항

안건 1 : 신주 발행의 건(기명식 보통주식)



안건 1	신주 발행의 건(기명식 보통주식)
------	--------------------

□ 관련 규정

정관 제12조(신주인수권)

- ① 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같은 종류의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□ 발행 내용

신주의 종류와 수	기명식 보통주식 300,000주
1주의 금액	10,000원
발행가액	1주당 100,000원
청약일	2023년 6월 26일
납입일	2023년 6월 26일
납입을 받을 은행	우리은행 자산수탁부

□ 인수 방법

정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(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운용·관리자인 국토교통부장관)에게 신주(기명식 보통주식) 300,000주를 전부 배정한다. 인수청약이 있는 주식의 수가 회사 신주 발행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는 실권주 배정을 위하여 납입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청약예정자 중 미청약인에 대하여 상법 제423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2023. 6. 26